

#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 윤리행동강령

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CJ ENM 주식회사는 사업보국, 인재제일, 합리추구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고객, 임직원, 주주,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모든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기준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하고자 한다.

### 제2조(적용대상)

본 행동강령은 CJ ENM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부문 및 그 자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

### 제3조(법규 및 사규준수)

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) 및 사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(용어의 정의)

- ① '금품수수'라 함은 현금, 수표, 상품권, 이용권, 유가증권, 물품 등과 같은 금전적·물질적 혜택을 제공받거나, 부채상환, 보증, 대출이자 대납, 동산 또는 부동산의 무상/임가 공여 받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.
- ② '향응/접대수수'라 함은 성, 술자리, 음식물, 스포츠(골프, 스크린 골프 등), 공연, 국내외 관광, 등의 수혜를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.
- ③ '편의수수'라 함은 교통, 숙박,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/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.
- ④ '사행성 오락'은 마작, 화투, 카드, 내기 골프, 내국인 카지노 등을 말하며 이 중 '불법도박'은 불법 스포츠 도박, 불법 카지노 등 법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를 말한다.
- ⑤ '이해관계자'라 함은 임직원, 고객사, 협력사 등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 내·외의 모든 자연인, 법인, 기타 단체를 말한다.
- ⑥ '신고자'라 함은 금품 등의 수수 및 윤리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한 모든 임직원과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사, 고객사 등을 말한다.
- ⑦ '협력사'라 함은 당사에 각종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업체를 말한다.
- ⑧ '주재국'이라 함은 당사의 주재원이 근무하는 국가를 말한다.
- ⑨ '미공개중요정보'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공시 규정상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.

### 제4조의 2(직무별 윤리행동강령)

임직원의 직무 별로 행동강령을 세분화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, 본 윤리행동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
## 제2장 회 사

### 제5조(임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)

- ① 회사는 임직원을 존중하고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한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을 일류 인재로 육성시킬 수 있는 제도 및 강령과 최적의 업무환경을 갖추고 이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- ③ 회사는 임직원의 고용과 승진에 있어 성별, 혈연, 학력, 연령,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한다.
- ④ 임직원은 개인의 보건 위생을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,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제반 강령 및

복리후생 제공에 최선을 다 한다.

⑤ 임직원은 개인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며,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한다. 회사는 임직원을 재해 및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강령, 시설, 교육 등을 통해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.

### 제6조(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)

- ① 회사는 효율적 경영을 기반으로 경영성과를 높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나 제안을 존중하고 이를 회사경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- ③ 회사는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,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는 관련법규를 준수한다.
- ④ 회사는 자회사 및 고객사와 거래 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.
- ⑤ 임직원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중요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
- ⑥ 임직원은 회사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과 지인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.

### 제7조(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)

- ① 회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여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적,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- ③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, 불법적인 정치 기부금을 제공하지 않으며, 회사는 임직원의 사업장 내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.
- ④ 임직원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.

## 제3장 기본 윤리 준수

### 제8조(청탁금지법 준수)

- ① ENM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, '공직자 등'에 해당되며,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를 수수하거나, '공직자 등'에게 제공할 경우,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가액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
- ② 음식물(3만원), 선물(5만원, 단 농축산물(화훼 포함)에 限 10만원), 경조사비(5만원, 단 축의금 /화환 限 10만원 內)의 가액범위 조정에도 불구하고, 직접적인 이해관계(계약, 평가, 인허가 등)에 있는 협력업체의 경우, 일체의 금품 제공 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ENM 내부규정에 의거, ENM 임직원은 대가를 받지 않은 외부강의 등의 출강 시에도 사내품의, 결재를 득해야 하며,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을 ENM 강연자로 초빙하는 경우에도 같다.

### 제9조(근무기강 준수)

- ① 임직원은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- ② 임직원은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성실한 근무기강 태도를 견지하여 근무시간 중 사적 주식거래, 인터넷 게임, 스포츠 도박 등을 하지 않으며, 스크린 골프장, 찜질방, 사우나, 당구장 등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.
- ③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위해 사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④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방침과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 부여된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이행한다.
- ⑤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, 정당한 방법과 업무관련 법규 준수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- ⑥ 임직원은 회사 내에서 혈연, 지연, 학연 등과 관련된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 하여서는 안

된다.

⑦ 임직원은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, 부동산, 기타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, 투자 등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및 직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⑧ 임직원은 상사, 부하직원, 동료의 서명, 아이디, 패스워드를 도용해서는 안 되며, 사문서 위조를 통한 부당한 업무처리나 사리도모를 해서는 안 된다.

### 제10조(조직 내 상하관련)

① 상사는 협력사 선정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어떠한 압력도 행사해서는 안 되며, 추천 시 회사의 객관적인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.

② 상사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되며, 부하직원은 상사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, 만일 이를 알고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
③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승진턱을 강요하거나 연봉, 고과를 빌미로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,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강제로 동원해서도 안 된다.

④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,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상사와 부하간의 금전 거래는 엄격하게 금지한다.

⑤ 임직원 상호간에는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으며, 청탁을 대가로 금품,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.

⑥ 임직원 상호간 승진, 영전, 취임 등과 관련한 축하 화환이나 화분 증정을 금지한다.

⑦ 부하직원은 상사의 출장·전배 시 법령과 사규에 위반하여 전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.

⑧ 임직원 상호간 법령과 사규에 위반하여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.

### 제11조(고객 보호 의무)

① 임직원은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고,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.

② 임직원은 상기 사항 외에도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, 고객과 약속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④ 임직원은 일반인의 초상, 음성, 성명 등을 방송에 노출할 경우,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# 제12조(상생협력 관련)

①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 관계자를 차별 대우 하지 않으며,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은 협력사와 거래 시 부당한 방법과 일방적인 판단을 경계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.

③ 임직원은 협력사의 어려움을 악용하거나 폭리를 챙기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④ 임직원은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모든 협력사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며,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사의 정보를 다른 협력사에 제공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
### 제13조(글로벌 윤리강령 준수)

① 국외 근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의 관계법령 및 사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, 현지 주재국의 법규도 준수하여 국가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국외 근무 임직원은 주재국의 문화와 현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고 편하하여서는 안 된다.

③ 국외 근무 임직원은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현지의 문화 선도에 앞장선다.

④ 국외 근무 임직원은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며,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.

## 제4장 부정 행위 금지

### 제14조(횡령·배임·유용 금지)

- ① 임직원은 회사 및 고객의 자산을 횡령, 전용, 유용, 착복 하여서는 안 된다.
- ② 임직원은 제작, 영업, 마케팅 등 업무 시 사용되는 회사 자산과 콘텐츠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**제15조(향응·편의수수 금지)**

- 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/접대를 제공받지 않는다.
-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회식비, 사내행사 찬조금, 식대 등 일체의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.
- ③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인적 용무는 물론 출장 방문 시 교통, 숙박 등 어떠한 편의도 제공 받지 않는다.
- ④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을 같이 하여서는 안 된다. 그러나, 사행성 오락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시 사전에 회사 및 소속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의 금전대차,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 행위를 금지하며, 본인 및 친인척 대출 시 이해관계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보증 제의를 받아 들여서도 안 된다.
- ⑥ 임직원은 본인 및 친인척의 카드대금, 외상값, 대출금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결제 및 상환을 요구해서도 안 되며, 그런 제의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.
- ⑦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아파트, 주택, 각종 장비 등의 임대(차), 매각,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⑧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지분이나 재산을 직, 간접적으로 취득, 증여,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. 또한,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직원 본인 및 가족, 친척 등이 이해관계자와 함께 부동산, 자산(콘도, 골프 및 헬스클럽 회원권, 골프장 등) 등에 공동투자 하는 것도 금지한다.
- ⑨ 임직원은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 자산과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회사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된다.
- ⑩ 임직원은 재직 중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, 취업 알선, 거래 계약 등 미래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.

**제16조(불법 도박 금지)**

임직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법에 저촉되는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안 된다.

**제17조(성희롱 및 사내·외 불륜 금지)**

- ① 임직원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성적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,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, 업무, 거래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 - 1. 신체적 접촉 행위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
  - 2. 외모에 대한 평가, 사적인 질문, 가벼운 성적 농담도 '성희롱'으로 간주되며, 성차별적 발언 및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
  - 3. 회식자리에서 술시중 강요 등 고정된 성 역할을 강요하지 않는다.
  - 4. 음란물(사진, 그림, 서적 등)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- 5.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② 임직원은 사내·외 불륜 등 풍기문란 행위로 사내·외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쳐서는 안 된다.

**제18조(음주운전 금지)**

- ① 임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발생하였을 시 회사로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은 면허정지 및 취소상태에서는 영업활동, 출퇴근, 출장 등의 회사업무 수행 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.

**제19조(겸업·부업 금지)**

- ① 임직원은 입사 후 신의성실 원칙 준수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자기사업을 해서는 안 되며, 또한 회사의 승인 없이 친인척 및 지인 등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② 임직원은 재직 중 겸업 또는 이해관계자의 임직원으로 취업을 해서는 안 된다.

## 제20조(갑질 금지)

- ① 지위(인사권 악용)를 악용한 부적절한 업무지시(프로세스 및 기준을 위반한 업무지시, 하위 직급자에 대한 사역행위 및 금전차용) 및 언행(상습적인 욕설, 인격모독 폭행)을 하면 안 된다
- ② 계약관계를 악용한 계약직,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한 차별적 태도 및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.
- ③ 거래관계를 악용하여 협력업체에게 부적절한 요구 및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.

## 제21조(기타 불법행위 금지)

- ① 카메라 및 기타 유사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, 촬영물을 배포, 판매, 임대, 제공 또는 전시, 상영해서는 안 된다
- ② 촬영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 및 자료 일체는 비밀유지 대상으로, 촬영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, 유출해서는 안 된다.

# 제5장 업무 수행 지침

## 제22조(원칙 준수 업무 처리)

- ① 임직원은 회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, 항상 투명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세우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.
- ② 임직원은 고가구매, 허위견적서, 단독입찰, 사전담합, 특혜제공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## 제23조(경비처리)

- ① 임직원은 회사 예산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, 초과 사용에 따른 예산 부족 시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하고, 어떤 경우라도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.
- ② 임직원은 허위 증빙 또는 증빙 없는 경비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③ 임직원은 출장비, 시내교통비 등 경비는 회사에 등록된 개인 통장을 통해서만 수령하여야 하며, 그 외 업무 중 어떠한 목적으로도 개인 통장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 통장 번호를 협력사에 알려 주어서도 안 된다.

## 제24조(외부강의 등의 신고)

- ① 임직원은 강의·강연·심사·평가·자문 등을 위해 세미나·공청회·심포지엄 등에 참여 할 때에는 사전에 품의를 통해 회사 및 소속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- ② 전 ①항 관련 강의로 등 수익금 발생 시 이를 사적으로 취하지 않고 회사에 신고하여 사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.

## 제25조(정보 보안)

- ① 임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회사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여서는 안 되며, 사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개인재산 증식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.
- ② 임직원은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관련 대외비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.
- ③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경쟁사와 정보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.
- ④ 임직원은 자신이 개발한 (유사)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유출 해서는 안 된다.
- ⑤ 임직원은 상기 사항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## 제26조(협력사와의 관계)

- ① 임직원은 협력사와 업무 협의 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진행한다.
- ② 임직원은 협력사와 하도급 거래 시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결제청구, 경영간섭, 보복조치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으며, 사전 협의 없이 비용을

전가하지 않는다.

③ 임직원은 전 ②항 외에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④ 임직원은 협력사 선정 및 등록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.

⑤ 임직원은 협력사와 거래 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, 업체와의 결탁, 특혜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으며,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어떤 사항도 고려하지 않는다.

⑥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사를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협력사로 등록시켜서는 안되며, 직위와 직책을 이용한 계약 체결, 거래 시 특혜 제공 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.

⑦ 임직원은 협력사에 친인척 및 지인의 채용, 승진,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.

⑧ 임직원은 개인 경조사를 직·간접적 방법으로 협력사에 알리지 않으며,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알려진 경우에는 경조금품의 제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윤리행동강령의 준수 및 징계

### 제27조(준수의무와 책임)

① 임직원은 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
② 리더는 구성원들이 동 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관리·감독할 책임이 있다

### 제28조(징계)

본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상벌기준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징계조치 한다.

### 제29조(위반사항 조사)

① 경영진단담당은 보고된 윤리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신속하게 조사한다.

② 임직원은 경영진단담당의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실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경영진단담당은 조사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### 제30조(신고의무 및 방법)

① 임직원은 본인의 윤리행동강령 위반 시 또는 다른 임직원이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 하였을 경우 즉시 경영진단담당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이메일 : CJ ENM 사이버감사실 [cjauditor@cj.net](mailto:cjauditor@cj.net) (익명/실명 제보 접수 가능)

CJ그룹 통합제보시스템 : <https://ethics.cj.net/whistles/regist> (익명/실명/케이휘슬 제보 접수 가능)

2. 유 선 : +82-2-371-8717

3. 우 편 :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66 CJ E&M센터 경영진단담당

CJ E&M Center, 66, Sangamsan-ro, Mapo-gu, Seoul, Korea

②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.

③ 임직원이 타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,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.

단, 신고자 및 신고관련 참고 진술자가 피신고자를 모해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.

### [직무별 행동강령]

별지 1. 방송제작 행동윤리강령(2020.2.1 제정)

**부 칙<2020. 2. 1.>**

1. 본 'CJ ENM E&M부문 윤리행동강령'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21. 1. 4.>**

1. 본 '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 윤리행동강령'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 방송제작 윤리행동강령

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(공적 책임)

우리는 방송제작과 관련하여, 진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수행한다.

### 제2조(인권 존중)

우리는 방송제작과 관련하여,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존중하며,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.

### 제3조(준법 정신)

우리는 방송 제작과 관련하여, 방송법령, 공정거래법령,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, 준법정신을 실천한다.

### 제4조(사회 통합)

우리는 방송을 통해 사회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, 국가와 지역사회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.

### 제5조(책임 의식)

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책임 의식과 직업 윤리를 인식하며,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 제2장 각 칙

### 제6조(방송 윤리)

- ① 방송 제작과 관련하여, 방송 내용과 관련된 사실이나 수집된 정보 등을 왜곡하지 않으며,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.
- ②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사실 관계를 최선을 다해 확인하며, 가능한 다양한 의견이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- ③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주관적 의견을 사실관계 확인없이 방송하지 않도록 한다.

### 제7조(제작 윤리)

- ① 일반인의 초상과 음성,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,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지 않는다.
- ② 남녀 성 역할의 왜곡, 성차별·성희롱 등의 조장을 하지 않으며, 외모나 장애를 희화화 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.
- ③ 인종, 국적, 성별, 직업, 지역 등에 의한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.
- ④ 개인의 주거나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침입해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는다.



- ⑤ 형사 피해자 및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을 지양한다.
- ⑥ 특정 정파나 정당, 이념 등에 편향되지 않도록 가능한 다양한 의견이나 입장을 반영한다.
- ⑦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품성과 교양 등 인격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⑧ 성(性)과 관련된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 제작되지 않도록 한다.
- ⑨ 사회적 소수자를 다루는 경우,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.
- ⑩ 범죄를 미화·조장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도록 한다.
- ⑪ 사회질서나 미풍양속, 공익을 해하는 방송은 하지 않으며,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.
- ⑫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 내용은 더욱 신중하게 제작한다.
- ⑬ 방송 언어는 원칙적으로 품위 있고 순화된 어법으로 표준말을 사용하며, 시청자가 알기 쉽게 표현한다.
- ⑭ 시청자의 투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는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내·외 프로세스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.
- ⑮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 경우 언론중재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구제한다.

**제8조(직무 윤리)**

- ① ‘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 윤리행동강령’을 성실히 준수한다.
- ②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방송을 제작하지 않으며, 법령 또는 회사 규정을 위배하여 본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③ 방송 제작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령에 위반하여 금품, 청탁, 향응, 선물 등을 받지 않는다.
- ④ 방송 제작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품의를 통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하며, 잔여 예산과 방송 제작을 위해 구입한 소품이나 기자재는 반드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⑤ 본인의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방송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부적절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.
- ⑥ 방송 제작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, 특히, 개인정보는 법령과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.
- ⑦ 방송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·주식 등의 투자를 하거나 지분 참여를 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.

**부 칙<2020.2.1.>**

- 1. 본 ‘CJ ENM E&M부문 방송제작 윤리행동강령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21.1.4.>**

- 1. 본 ‘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 방송제작 윤리행동강령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